##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2001~42	제출연월일 : 2001. 11 . 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<ul><li>□ 개정이유</li><li>○ 무인 민원 발급기 ·</li></ul>	설치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코져 함.
	에 의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항 신설(안 제5조제2항) 를 현금으로 징수함
<ul><li>□ 개정근거</li><li>○ 민원사무처리에관</li><li>○ 행자부고시 제20</li></ul>	-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 2 00-137호

##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다음에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.

"별표1"의 제7호 부동산에 관한사항중, (1) 개별공시지가확인 및 (2)토지(임야)대장등본지가병기발급란의 기준을 각각 "당해년도 1회 공시기준(1필지)"로 하고, 비고란을 각각 "동일필지 당해연도 공시일자별 추가분 200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	행			개		정		안		
제5조(징수방법) ① ~ ② (생 략)				제5조(징수방법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						
<u>〈신 설〉</u>				③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.						
<별표 1> 재증명등 수수료 요율표				<별표 1> 재증명등 수수료 요율표						
구 분	기 준	요액	비고	구	분	기	준	요액	刊	고
(1)개별공시지가확인	<u>1</u> 필지	500	<신설>	(1)개별공시지가확	인	당해연5 공시기준 (1필지)		500	동일필 년도공 별추가	
(2)토지(임야)대장등본 지가병기발급	1필지	300	<신설>	(2)토지(임아)대장 등본지가병기발	7_	당해연5 공시기준 (1필지)		300		지당해 시일자 분200